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38
----------	-----

2023년 2월 24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안일 : 2023년 2월 6일
- 다. 회부일 : 2023년 2월 9일
- 라. 상정일 : 제31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3년 2월 24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성흠제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시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체계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

#### 나. 주요내용

- 가.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목적 및 정책대상(안 제1조~제2조)

나. 디자인산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서울시 책무 부과(안 제3조)

다. 디자인산업 관련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라. 디자인산업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마.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안 제11조~제1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기타

(1) 입법예고(2022. 10. 27.~11. 16.)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신설(2022.8.19.)에 따라 디자인 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제정조례안은 총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안 제1조~안 제3조)은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본칙에 해당하는 부분(안 제4조~안 제13조)은 법령관계, 기본계획, 지원사업, 위원회의 설치·구성·직무·운영, 지도·감독, 사무위탁, 포

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칙에 해당하는 부분(안 제14조)에서는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음

### 〈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

조번호/조제목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서울시 디자인산업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자인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제2조(정의)	“디자인”, “디자인산업”, “디자인 전문회사”를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제6조(지원사업)	디자인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하기 위한 디자인산업 관련 지원사업 규정
제7조(위원회 설치 등)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구성 등)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개의 및 의결 규정
제11조(지도·감독)	재정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12조(사무의 위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디자인 관련 법인·단체 민간위탁
제13조(표창)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
제14조(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명시

## 나. 입법 배경

- 서울특별시(이하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2022.7.11.)으로 시정 전반의 디자인 관점을 도입하고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 구현을 위해 디자인 총괄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디자인정책관’을 신설함

- 기존 ‘문화본부’의 디자인정책 업무와 도시계획과의 경관개선 및 도시 빛정책 업무 등을 일원화하여 ‘디자인정책관’ 산하 ‘디자인정책담당관’ 과 ‘도시경관담당관’으로 이관함. 또한 디자인산업의 경제적 가치 확대에 따라 디자인산업 육성, 우수 디자이너 발굴·지원 및 산업디자인 지원 강화를 위해 ‘디자인산업담당관’을 신설(2022.8.19.)하였음
- ‘디자인산업담당관’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약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디자인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디자인산업담당관 분장**

1. 디자인산업 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기획
3. 디자인산업 관련 행사 및 포럼 개최에 관한 사항
4. 디자인기업 및 우수디자이너 발굴·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디자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다. 검토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이번 제정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서울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2) 정의(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제품디자인
- 나. 환경디자인
- 다. 시각·포장·정보디자인
- 라. 서비스·경험디자인
- 마.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 바.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디자인
- 사. 산업공예 디자인
- 아. 융합디자인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준하는 디자인행위와 결과물

- 안 제2조는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대상인 “디자인”, “디자인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2조제1호의 “디자인”의 정의는 관련 법령인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산업디자인법)」 제2조1)에서 명시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의 범위인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함
- 타 시·도 산업디자인 육성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디자인산업”과 “산업디자인”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각 조례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은 「산업디자인법」 제2조와 「디자인보호법」 제2조2)의 정의가 통용되고 있음
- 이번 제정조례안에서는 「산업디자인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의 범위를 확장하여 ‘정보디자인, 경험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융합디자인’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디자인 전체영역을 포괄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 2)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 정의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산업디자인법」이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의 정의 외에 추가된 디자인 분야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산업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되고 확장되는 디자인의 개념에 따라 변화한 새로운 디자인 분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개념과 구체적인 의미 및 세부 분류 등을 시행규칙이나 방침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참고: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경험디자인 이론서’ 디자인분류체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디자인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연구·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자문·활용 등을 하는 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 안 제2조제2호에서 “디자인산업”의 정의는 안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연구·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자문·활용 등을 하는 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 ‘산업디자인진흥법 체계 개선 및 개정을 위한 법제 연구(2021.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산업디자인법」에서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디자인 전체 영역 중 일부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규범상 개념 정의의 내용을 보면 디자인 일반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디자인”이 특정 산업에 국한된 디자인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디자인법)」을 「디자인진흥법」 또는 「디자인산업진흥법」 등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안 제2조제1호의 “디자인”은 그동안 통용되고 있던 「산업디자인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해 온 디자인 범위를 확장하고 포괄하는

의미로 재정립한 바, 안 제2조제2호의 “디자인산업”의 정의 또한 「산업디자인법」에서 정의하는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를 ‘연구·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자문·활용 등을 하는 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으로 확장하여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 범위를 규정한 것은 타당해 보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디자인 전문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기업

나.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패션·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 안 제2조제3호에서는 “디자인전문회사”를 「산업디자인법」과 「통계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으며,
- 「산업디자인법」에 따르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며, 디자인 전문인력, 사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7개 디자인 부문<sup>3)</sup>의 회사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sup>4)</sup>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발적 신고제로 운영되므로 실제 디자인산업 전문기업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없음<sup>5)</sup>
- 따라서 이번 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명시하는 지원대상인 “디자인전문회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산업디자인법」에 따라 신고된 기업 외에도 「통계법」의 한국표준산업분류<sup>6)</sup>에 따른 전문

3)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기타디자인, 종합디자인(부문 3개 이상 신고시 자동신고)

4) 해당 신고제도는 디자인회사의 전문성 강화 및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2022년 8월말 기준(한국디자인진흥원 통계), 전국 11,230개 회사 중 서울에는 39.1%(4,395개)가 등록되어있음.

5) 실제로 디자인기업을 운영하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하지 않은 기업이 77%에 달함. 디자이너 1명만 고용해도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인쇄업 등 제조업을 병행하면서 공공입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며, 민간기업을 주 고객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기업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디자인업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디자인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것으로, 시장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번 제정조례안의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임
-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 등을 포함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할 것임

### (4)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는 이번 제정조례안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명시한 것은 마땅해 보임

6)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엔(UN)이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통계청장이 작성하고 대분류 21대, 중분류 77대,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총 5단계로 구성



## (5) 기본계획 등(안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자인산업진흥 기본방향과 목표
2. 디자인산업진흥의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
3. 디자인산업진흥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4. 디자인산업진흥 관련 법·제도 등의 개선
5. 그 밖에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디자인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 등을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 안 제5조는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것으로, 이는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안 제3조(시장의 책무)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제2항에서의 ‘종합계획’은 종합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안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용어사용의 혼재로 인한 혼란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제2항은 디자인산업 실태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관련 법령인 「산업디자인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안 제5조제2항을 임의규정(~할 수 있다)이 아니라 강행규정(~하여야 한다) 또는 훈시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을 적용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디자인법)」**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b>종합계획</b> 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디자인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b>할 수 있다.</b> ③ (생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b>기본계획</b> ----- ----- <b>하여야 한다.</b> ③ (제정안과 같음)

(6) 지원사업(안 제6조)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을 진흥 및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디자인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디자인 지원사업
2. 디자인산업 관련 창업·제작, 기술개발·제품화 등 지원
3. 디자인산업 교육, 홍보 및 마케팅,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
4. 디자인산업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5. 디자인전문회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디자인 관련 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6조는 디자인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자치구, 디자인 관

련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비용 지원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7) 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안 제7조는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구체적인 심의·자문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 (8) 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디자인산업 소관 실·본부·국장 및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1. 디자인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디자인산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안 제8조제1항에서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번 제정조례안의 소관부서인 디자인정책관이 운영 중인 5개 위원회의 정원은

15명에서 50명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있으나, 신설되는 디자인산업 진흥위원회 정원은 15명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심의·자문 실적과 심의 분야의 확장 등을 고려하여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2항에서는 위원의 자격으로 ①디자인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②디자인산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함. 디자인산업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원의 자격으로 포괄적으로 기술된 ‘디자인산업’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참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공간, 산업, 시각, 서비스, 범죄예방, 유니버설, 경관디자인 및 건축, 조경, 구조, 교통, 사회학, 정책학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 또한, 현재 디자인정책관에서 운영 중인 5개의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자격 중 하나로 ‘서울특별시 소관 상임위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의원’, ‘관련 상임위 위원’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제정조례안에서는 시의원의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번 제정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타 위원회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의원의 위원 위촉 사항을 이번 제정조례안에서 제외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원의 자격 중 하나로 안 제8조제2항제4호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 위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제3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디자인정책관 소관 위원회 정원 및 시의원 위촉 기준 >**

구 분	디자인정책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공공미술 위원회	미술작품심의 위원회	좋은빛 위원회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정 원	50명	15명	30명	25명~50명	5명~15명
시 의 원 위촉 기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명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의원	관련 상임위 위원

제 정 안	수 정 의 건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생략) <u>&lt;신 설&gt;</u> 1.~3. (생략)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b>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b> 2~4. (제정안 1·2·3과 같음)

(9)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9조)

-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를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도록 한 것을 따르는 것임

## (10) 위원회의 운영(안 제10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일반적인 조항이 생략되어있으나 안 제10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번 제정조례안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해 보임

## (11)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재정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등의 재정지원금 사용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시 교부 결정 변경 또는 취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재정지원금의 사용 목적을 감독하여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을 철회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명시한 바, 재정지원금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법인·단체 등이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시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12) 사무의 위탁(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것으로, 사무 위탁 및 비용지원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13) 표창(안 제13조)

**제13조(표창)** ①시장은 디자인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안 제13조는 시장이 디자인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해 보임
- 다만, 디자인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14) 부칙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안 부칙 제2조는 이번 제정조례안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5년 범위의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따른 것으로 이해되며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정한 기한으로 보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라. 종합 의견

- 이번 제정조례안은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 디자인산업의 경제적 가치 확대에 따라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우수디자이너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시가 조직 신설, 예산 배정 등의 절차를 마친 바,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 자치사무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 관련 법령인 「산업디자인법」에서 통상적으로 정의한 “산업디자인”과 “디자인산업”에 대한 용어와 산업환경 및 사회변화에 따라 재정립되고 확장되는 관련 개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디자인산업 현황을 고려한 “디자인”, “디자인산업”, “디자인전문기업”의 정의를 통해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 대상을 폭넓게 확대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정조례안의 의의가 있음
- 또한 이번 제정조례안이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민간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 바, 재정지원과 민간위탁 사업이 불성실하게 운영되거나 지원된 사업비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성과평가 등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락.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538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23년 2월 24일

제 안 자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 1. 수정이유

- 용어사용 혼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수정하고,
-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조례안의 목적달성을 위해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하나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명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수정하고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안 제5조제2항 수정).
- 위원회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신설함(안 제8조제2항제1호 신설).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디자인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안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부터 제4호는 제정안 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

- ②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b>종합계획</b>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디자인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b>할 수 있다.</b></p> <p>③ (생략)</p> <p>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p> <p>② (생략)</p> <p><b>&lt;신설&gt;</b></p> <p>1.~3. (생략)</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b>기본계획</b>----- -----<b>하</b>-----</p> <p><b>여야 한다.</b></p> <p>③ (제정안과 같음)</p> <p>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p><b>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b></p> <p>2~4. (제정안 1·2·3과 같음)</p>